

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192

제출년월일 :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-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식수 업무에 대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관장중 단서조항을 신설함(제4조 제2항)

☐ 개정조례(안) : 별 첨

☐ 신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조 제1호 및 제2호·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u>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</u> 제4조 (소장) ① (생 략)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 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 <u>(신설)</u>	<u>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</u> 제4조 (소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,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2 호 · 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<u>건설도시국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는다</u>	상수도시설및 생활식수업무 의 경제성 및 효율성 도모.